

수원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나64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나6496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38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곽선우

변론 종결 2023. 4. 11.

판결 선고 2023. 5. 3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38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8. 3. 7.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3. 9. 접수 제29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2나71561 위자료 사건)이 진행되던 중 2022.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관련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결정사항

1. 원고1)는 2022. 11. 30.까지 피고2)에게 9,8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31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수원지방법원

2022나6496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② 원고는 2022. 10. 26. 관련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2. 16. 관련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에 2022. 11. 8. 관련사건 조정결정이 위 ①항과 같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이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관련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사건 조정결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사건 조정결정, 2021카단31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신청, 수원지방법원 2022나6496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주면, 위 가처분 사건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해 준 것인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관련사건 조정결정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호증(각 녹취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도 아닐뿐더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갑 제15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사건 조정결정 중 제2항 기재 '항소취하'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재광

판사김초하

판사전민정

별지

1) 당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관련사건 조정결정문 내에서 같다.

2) 당심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관련사건 조정결정문 내에서 같다.